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12 발의연월일: 2025. 4. 29.

발 의 자 : 이인영 · 김동아 · 김용만

장철민 · 김기표 · 이학영

민병덕 • 박성준 • 이정문

임오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후원회에서는 해당연도 은행마감 시간 이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후원받은 후원금이 기한 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되지 못해 불부합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 인수·인계 문제로 인한 불부합금액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기부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불부합금액이 발생한경우,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통지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부합금액이 발생한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연간 기부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금액(이하 "불부합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후원회가 불부합금액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부합금액은 다음 연도의 연간 기부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
	항에 따른 연간 기부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해당 연도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금액(이하 "불부합금액"이
	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제40
	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 30일
	전까지 후원회가 불부합금액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도
	록 통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
	고 불부합금액이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
	<u>우 불부합금액은 다음 연도의</u>
	연간 기부한도액에 포함하지
	<u>아니한다.</u>
<u>③</u> · <u>④</u> (생 략)	<u>⑤</u> ・ <u>⑥</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